



: 2020-01-16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 | |
|---------|--|
| 사 건 | 2019노599 사기 |
| 피 고 인 | A |
| 항 소 인 | 검사 |
| 검 사 | 남수연(기소), 류승진(공판) |
| 변 호 인 | 변호사 권광현 |
| 원 심 판 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고단278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 10. 10. |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의 전부 및 일부를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가 아니다. 학생연구원들이 지급받은 인건비를 임의로 각출한 것은 아니며



그들이 인건비 전액을 공동관리 계좌에 입금한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연구비 신청 당시부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 및 그로 인한 금원의 편취가 인정된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경합범으로 판단한 채 공소제기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관하여 면소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학생연구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그들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인건비에 대한 처분권한은 일단 학생연구원들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들이 자신 소유의 통장에 입금된 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여 연구실의 공동관리 계좌에 입금하거나 공동관리 계좌를 관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처분행위와는 독립된 학생연구원들의 처분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들의 처분을 피해자의 처분과 동일시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와 같은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사정을 근거로,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에 관한 피고인 의사의 단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시효기간이 경과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 재판장 | 판사 | 유남근 _____ |
| | 판사 | 안효승 _____ |
| | 판사 | 하세용 _____ |